



프랑스 이중국적에 관한 제도와 법령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국적난민팀

I. 서론

국제적으로 다중 국적(Multinationalité)의 가장 흔한 형태는 이중 국적이다. 이중 국적이란 두 개의 국가에 동시에 국적이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적에 관한 프랑스 법은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의지 및 권리를 고려하여 국적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였다.

1804년의 프랑스 민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온 프랑스 국적에 관한 법은 국민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권력을 자유롭게 받아 들이는 국가가 공화국이라는 정치 사상을 바탕으로 입법화되었다. 이러한 개념의 범정신은 자연히 프랑스 국적외의 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사실에 적대적일 수 밖에 없었다. 즉, 1804년의 프랑스 민법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지켜져 온 국적에 관한 원칙은 가족이라는 단위로부터 프랑스 인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속민주의(Jus sanguinis : droit du sang)였다.

이후 개정을 거듭한 프랑스 법은 프랑스인의

이중 국적에 관해 점차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이런 관용적인 태도변화에 기여한 요소로는 19세기와 20세기에 걸친 이민의 물결과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인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경우 얻는 이익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인식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프랑스에 도착한 외국 이민이 가장 빠른 시일에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결과로서 외국 이민에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문호를 광범위하게 개방하면서 동시에 외국 이민의 본래 국적의 포기나 상실을 강요하지 않았다. 즉, 1851년 1월 22일과 29일의 법에 외국인 부모가 프랑스 영토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프랑스 국적을 인정하는 속지주의(Jus soli droit du sol)를 도입하여, 오늘날 1993년 7월 22일 법과 민법 19-3 조와 19-4 조에 이중 속지권(double droit du sol) 원칙으로 존속되고 있다. 또한 국제 결혼을 통한 외국인의 프랑스 국적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한 이중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21-1 조와 21-2 조).

후자의 경우, 1945년 10월 19일 프랑스 국적법(Code de la nationalité française)은 외국 국적을 획득한 프랑스 국민의 권리 상실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외국 국적의 획득으로 인한 프랑스 국적의 박탈은 정부의 공식적인 결정, 즉 참사원(Conseil d'Etat)의 법령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했다(프랑스 국적법 96조로 현재 민법 23-7 조와 23-8 조). 이후 프랑스 국적법 87조를 개정한 1973년 1월 9일 법은 자의적으로 1963년 스트라스부르크 조약 가입국의 국가의 국적을 획득한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 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현재 민법 제23조).

또한 프랑스에서의 이중 국적의 취득은 1963년 5월 6일 다중 국적의 감소에 관한 유럽 위원회 조약(Convention du Conseil de l'Europe sur la réduction des cas de pluralité de nationalités du 6 mai 1963) 및 1997년 11월 6일 국적에 관한 유럽 조약(Convention européenne sur la nationalité du 6 novembre 1997)과 같은 국제 협약에 근거한다.

II. 이중 국적의 취득

프랑스의 경우 현재 국적에 관한 법률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민법 1권 1편에서 국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이중 국적을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출생시 또는 이후에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민법 제19조~제21-7조).

프랑스는 속지주의를 택한 외국의 영토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대부분의 경우 신생아의 부모가 친자관계로 인한 국적의 취득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일 경우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다. 일반적으로 국적은 또한 귀화, 신분 변경 신고(결혼·미성년자), 영토의 할양 또는 거주하던 국가의 독립(1962년 알제리 독립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

프랑스 법은 1963년 5월 6일 다중 국적의 감소에 관한 유럽 위원회 조약(Convention du Conseil de l'Europe sur la réduction des cas de pluralité de nationalités du 6 mai 1963) 및 1997년 11월 6일 국적에 관한 유럽 조약(Convention européenne sur la nationalité du 6 novembre 1997)의 테두리 내에서 현재 이중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나 프랑스인이 한 쪽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음으로써 자국민의 이중 국적 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다중 국적의 감소에 관한 유럽 위원회 조약의 경우, 복수 국적의 감소와 복수 국적자의 군복무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약은 조약 가입국의 국민이 타 가입국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획득했을 경우 본래 소유하고 있는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968년 프랑스를 포함한 12개 국에 의해 비준되었으나 비준국 중 독일은 2001년 12월 21일 조약을 탈퇴했으며, 스웨덴의 경우 조약 내용 중 다중 국적자의 군복무 의무에 관한 조항만 비준하고 있다.



한편 상기 조약을 개정한 국적에 관한 유럽 조약은 상기 조약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조약 가입국의 해당 개인이 조약 가입 국가에서 출생하고 18세 이전에 시작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습관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였거나, 조약 가입국의 해당 개인이 다른 조약 가입국의 국민과 결혼 후 자의적인 명백한 의사 표시를 통해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적의 획득을 요청한 경우 조약 가입국의 국민인 해당 개인의 본 국적을 유지하면서 다른 조약 가입국의 국적 획득을 가능케 하였다(...conserver sa nationalité d'origine en cas d'acquisition de la nationalité d'un autre Etat signataire du protocole : soit lorsque l'intéressé y est né et y réside, ou y a résidé habituellement pendant une période commençant avant l'âge de 18 ans, soit par l'effet d'une manifestation expresse de volonté faisant suite au mariage de l'intéressé avec un ressortissant de cet Etat). 또한 다중 국적의 감소에 관한 유럽 위원회 조약의 비준국의 다중 국적자에 대한 상충적인 국내법 현실을 감안한 국적에 관한 유럽 조약은 16조에 조약 가입국은 이중 국적 중의 한 국적의 포기나 상실의 불가능하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국가 국적의 취득이나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다른 국적의 포기나 상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Un Etat partie ne doit pas faire de la renonciation ou de la perte d'une autre nationalité une condition pour l'acquisition ou le maintien de sa nationalité

lorsque cette renonciation ou cette perte n'est pas possible ou ne peut être raisonnablement exigée"). 본 조약은 현재까지 프랑스·이태리 및 네덜란드만이 비준을 하였다.

한편 프랑스는 이중 국적자와 그 외 프랑스 국민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어떠한 차별도 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중 국적을 소유한 프랑스 국민이 다른 국적의 국가의 영토에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프랑스 국적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일반적으로 해당 개인은 상기 상황에서 해당 국가가 프랑스 국적의 모든 권리를 배제하는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Ⅲ. 이중 국적 간의 충돌

국제적으로 이중 국적에 관한 최초의 판결은 1955년 4월 6일의 국제사법 재판소의 “노테봄 (Nottebohm)사건”에 대한 판결을 들 수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리히텐슈타인의 국적을 주장하는 과테말라 국적의 노테봄의 이중 국적 간의 충돌 사건에서 과테말라 국적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새로 취득한 리히텐슈타인의 국적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 재판소는 노테봄이 취득한 리히텐슈타인 국적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단지 분쟁 당사국인 과테말라에서만 그 유효성을 부인함으로써 이중 국적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이중 국적에 대한 법률적 정서는 이를 인정(reconnaissance)하기보다는 허용(autorisation)하

는 편으로 이중 국적을 가진 자국 국민은 특정 시점에는 하나의 국적을 가진 상태로 인정한다. 즉, 일정 국가에 국민으로서 체류하며 그 국가의 국적을 다양한 형태의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체류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적 조치를 향유하기 위해 다른 국적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개인이 국적을 소유한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개인은 중립의 태도를 지켜야 하며 분쟁에 대한 어떠한 의견의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적을 부여한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국심이라는 원칙이 존재한다. 개인에 대한 존중의 원칙에 의거해서도 관련 국가의 국민이 이중 국적 소유자에게 분쟁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국적 소유자가 국적 소유 국가 중의 한국가를 선택해서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취한 경우, 해당 개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국가의 도움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과거의 이중 국적간의 충돌에 관한 프랑스 법률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편이었지만 오늘날은 좀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적으로 볼 때 정치적 권리, 특히 민사법상의 권리 행사로서 프랑스 영토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국적을 필요로 하며, 이 국적은 또한 개인의 법적인 지위를 결정하며, 해당 개인을 프랑스 법원의 관할권에 귀속시킨다(민법 14조, 15조).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국적간의 충돌은 해당 개인의 외교적 보호 문제를 야기

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중 국적간의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선택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개인에게 유리한 국적의 선택을 관용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이중 국적이 갖고 있는 고유한 법적 이익을 희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부터 국적에 관한 프랑스 법이 취해온 태도이다. 이중 국적 간의 충돌 당사자가 프랑스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프랑스 법원은 해당 개인의 권리 행사 적용법, 사법제도의 권한, 외국 법원의 판결 또는 국제 조약의 적용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결하더라도 해당 개인이 프랑스 국적을 소유한 것을 판결한다. 과거의 국적법(Code de la nationalité)은 136조에서 일반법의 판사가 프랑스 국적에 관해 선고한 판결의 절대적인 권한(*autorité absolue : erga omnes*)을 인정하였으며 1945년 10월 19일자 명령에 의해 이를 확인했다(현재는 민법 29-5조에서 재확인). 이중 국적간의 충돌에 관한 이런 엄격한 법 적용은 과거부터 프랑스 법정신의 바탕을 이룬 공화국(*Républicaine*)사상, 즉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 국적에 반해서 외국 국적과의 충돌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를 참고하더라도 해당 개인은 프랑스 국민이라는 사상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이후 프랑스 법은 이중 국적에 대해 좀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바로 군복무에 관한 분야가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다. 즉 이중 국적자가 군 복무를 위해서 프랑스가 아닌 다른 국가를 위한 군복무를 선택한 경우 해당 개인이 프랑스



에 이행해야 하는 군복무 의무는 소멸된다(군복무법 L3 bis 조, L38 조). 또한 프랑스 파기원은 이중 국적자의 이혼에 관한 1969년(Civ., 10 mars 1969)과 이중 국적을 가진 부부간의 아동 양육에 관한 1987년(Civ., 22 juillet 1987)도 판결에서 프랑스 국내법보다는 다른 외국법의 적용을 인정했다.

또한 프랑스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외국과 체결한 국제 조약에서 프랑스국민으로서 이중 국적을 소유한 자의 타국 국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1983년 7월 20일 아동에 관한 조처에 관한 프랑스-포르투갈 조약 8 조).

오늘날, 프랑스는 국가 주권 원칙에 입각하여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를 프랑스 국적을 소유한 프랑스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으로 인정하여 프랑스 국민에게 부여하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다. 하지만 상기 이중 국적자가 프랑스가 아닌 타 국적 소유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국적의 국가에 프랑스 국적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상기 이중 국적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 의해 배타적인 위치에 있는 국민으로 간주되며, 만약 해당 국가의 외교적 보호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프랑스의 외교적 보호가 시행된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이중 국적자가 프랑스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를 발생한다.

IV. 이중 국적의 상실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중 국적자는 타 국적 국가의 법, 프랑스 법 또는 국제 조약에 의해 본인의 국적이 변경될 수 있다. 프랑스는 프랑스 국민의 무국적화를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국적 포기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 표시를 조건으로 한다. 즉, 외국 국적을 취득한 프랑스 국민의 경우,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프랑스 영사관에 본인이 명백하게 프랑스 국적 포기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만 프랑스 국적이 소멸된다.

강 흥 진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위원)